

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22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04.03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 법률이 2012. 1.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른 「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 변경 및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(“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” 를 “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” 로 변경)
-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----- (안 제18조)
 - 제한시간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
 -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
 - 제한대상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(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)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
- 「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」이 개정중에 있어 부칙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시행시기를 달리함
 - 대규모 점포 :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 되는 날
 - 준대규모 점포 : 조례 공포일

개정조례안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있음

○ 입법예고 : 2012. 2. 17. ~ 3. 7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○ 방침결정문

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” 를 “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” 를 “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 등” 이라 한다)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등과” 로 한다.

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전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.
2. 의무휴업일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,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제18조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
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
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지역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지역경제과장 김 흥 배
	담 당 직위·성명	소상공인계장 원 익 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조 경 래 (행정 2696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 등”이라 한다)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**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
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안 번호	22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4월 18일
제 출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2. 4.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
관련 조항을 수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부칙의 제2조의 적용례를 삭제코자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7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안산시조례 제 호

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
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
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
정한다.

부칙에서 “안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
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부칙에서 안 제2조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신설>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적용예) 제18조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</p>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삭제></p>